

의안 번호	767
----------	-----

2021. 6.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7
----------	-----

제출년월일 : 2021. 6. 1.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 1.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 시 구체적인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체계를 마련하려고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한정하여 정함(안 제14조)
- 나. 하수도요금 자동결제 시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다.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 라.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29조 및 별표 6)
- 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사. 가산금 부과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31조)
- 아. 사용료 등 및 과오납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 자.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 등을 개정함(안 제33조 및 제35조)
- 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별표 1)
- 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함(안 별표 2)
- 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5)
- 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3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참고 1

- 1) 「하수도법」 제65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2) 「민법」 제163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다. 합 의: 자원순환과, 각 급수센터 및 하수센터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신·구별표대비표: 붙임
- 3) 입법예고(2021. 4. 27. ~ 5. 18.) 결과: 제출 의견 없음

-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미반영(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 반영 예정) 붙임
- 6)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7) 현행 조례: 참고 2
- 8) 참고 조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참고 3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사용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등의 신고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을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상수도 급수 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 등”을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일시사용신고)”를 “(일시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배수설비설치자”를 “배수설비 설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비는”을 “공사비용은”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신청서”를 “준공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료”로,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요금 징수 업무 소관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를 “계측장치의 고장으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동이체 납부의 할인)”을 “(하수도요금의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납부고지서상 하수도요금만을”을 “수도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만”으로, “자동이체”를 “자동이체·자동결제”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나목 중 “하천수, 온천수, 해수”를 “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수도사용자이면서”를 “상수도와”로, “겸용으로”를 “모두”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를 “계측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계측장치의”로, “적치,”를 “적치나”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점용 허가”를 “점용허가”로, “점용료”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을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공고”를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은 다음”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설치”로, “인·허가”를 “인허가신청”으로,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를 “통보

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인·허”를 “인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설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외에”를 “외의”로, “감면 또는 면제”를 “감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중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광고”를 “광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광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을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법령과”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부과·징수함”을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선 또는폐업지원금”을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하고자”를 “지원하고자”로, “인터넷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감면 등)”을“(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의2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7의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8의3. 비영리목적의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제30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사용료 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

축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가산금 = 체납된 사용료 등 × 3/100 × 12개월 × 체납일수/365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소멸시효) 가산금을 포함한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처분) 시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절차에 따른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3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연도별 m <sup>3</sup> 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부터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3.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구점, 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li> <li>◦ 기숙사</li> <li>◦ 오피스텔</li> <li>◦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미만인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함</li> <li>◦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li> <li>◦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li>◦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함</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li> </ul>	
대 중 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li> </ul>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개정 2021. . .>

## 수질 하수도 사용료

(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에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 $\alpha$ )을 고려하여 산정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 허용기준 또는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 < C ≤ 1.3	1.3 < C ≤ 1.7	1.7 < C ≤ 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0	0.1	0.2	0.3	0.4

-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1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해당자 1명당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2명까지만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3호의 해당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으로 한정한다.
3. 감면신청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보조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7.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업종 \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빗물이용수	재처리수
가정용	70	70	70
일반용 및 대중탕용	50	50	50
산업용	65	100	100

- 비고)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3.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8. 제29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단, 산업용은 제외한다)

가.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는 사용자

구 분	2021년 7월 ~ 2022년 6월 검침분	2022년 7월 ~ 2023년 6월 검침분	2023년 7월 검침분 이후
감면율	30%	20%	10%

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사용자(하수관로 사용자)

구 분	2021년 7월 ~ 2022년 6월 검침분	2022년 7월 ~ 2023년 6월 검침분	2023년 7월 검침분 이후
감면율	70%	60%	50%

9. 비영리목적의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필요</u>----- -----.</p>
<p>제3조(<u>사용변경 등의 신고</u>) ① 배수 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u>사용하는</u>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u>시장에게 신고하여야</u> 한다.</p>	<p>제3조(<u>사용 등의 신고</u>) ① ----- ----- - <u>사용하려는</u> ----- ----- ----- <u>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등의 신고를 해야</u> -----.</p>
<p>1. 삭 제</p>	
<p>2. <u>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u> <u>·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u> <u>할 때</u></p>	<p>2. <u>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u> <u>또는 상수도 급수 외의 방법으</u> <u>로</u> ----- ---</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u>하수도사용료</u>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 른 때</p>	<p>4. ----- <u>하수도 사용료</u> ----- ----- ---</p>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삭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등-----.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일시 사용신고) -----  
-----  
-----  
-----  
----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② -----  
-----  
-----  
-----  
-----  
-----  
----- 그렇지 않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  
-----  
-----  
-----  
----- 갖추어 -----  
-----.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배수설비 설치자-----  
-----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  
-----  
----- <단서 삭제>

③ ----- 공사비용은 -----  
-----  
-----  
----- 드는 -----.

④ -----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사비용-----  
-----  
-----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 준공검사 신청서-----  
-----

-----  
-----  
-----  
-----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② -----  
-----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  
----- 따라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

②·③ (생략)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

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료-----  
-----  
-----.

④ ----- 사용료-----  
----- 창원시  
(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요금  
징수 업무 소관 부서-----  
-----.

⑤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  
-----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

제16조(자동이체 납부의 할인)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상 하수도요금만을 납부하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은 5,000원 이내로 한다.

제16조(하수도요금의 할인) -----  
----- 수도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만 -----  
----- 자동이체·자동결제-----  
-----  
-----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  
-----.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으로 하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생략)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  
-----

- 다. (생략)
-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 다. (현행과 같음)
- 3. ----- 상수도  
와 ----- 모두  
-----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④ (생략)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  
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측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계측장치의 -----  
----- 적치나 -----  
해서는 안 -----.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

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  
다.

② (생략)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  
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  
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  
-- 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점용  
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않고 -----  
-----.

④ -----  
----- 않는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



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생략)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

5. (현행과 같음)

6. -----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설치 ---- 인허가신청 -----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  
-----  
--.

나. -----  
-----  
-----  
- 인허-----  
-----.

② -----  
-----  
-----  
-----  
-----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에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않는다.

③ -----  
-----  
가설건축물-----  
-----  
-----  
-----  
----- 않는다.

④ -----  
외의 -----  
----- 감경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드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

1. -----

가. -----  
----- 하  
수도정비기본계획-----  
-----  
-----  
-----  
-----.

나. (현행과 같음)

2. ----- 원인자부담  
금 -----  
-----  
----- 공보, 게  
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  
-----.

③ -----  
-----  
-----  
----- 드는  
-----  
-----

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함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관계 법령,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 -----  
-----  
----- 부과·징수한다.

2. -----  
-----  
----- 있다.

② (생략)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 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원일정 등의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  
-----  
-----  
-----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원하고자 -----  
-----  
-----  
- 시 홈페이지-----  
--.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6의2.·7. (생략)

<신설>

8. (생략)

8의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

<신설>

9.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생략)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 제2호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 적용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6의2.·7. (현행과 같음)

7의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8. (현행과 같음)

8의2. -----  
----- 개인하수처리 시설 사용자

8의3. 비영리목적의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9. (현행과 같음)

② ----- 사용료 등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용료 -----  
-----.

제30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 및  
-----  
-----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text{연체금} = \text{미납요금} \times \frac{3}{100} \times 12 \text{개월} \times \frac{\text{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text{가산금} = \text{체납된 사용료 등} \times \frac{3}{100} \times 12 \text{개월} \times \frac{\text{체납일수}}{365}$$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 등 및 원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80조제5항과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그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하수도법」, 「창원시 재

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2(소멸시효) 가산금을 포함한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처분) 시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절차에 따른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무회계 규칙」 및 「창원시세 기  
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  
한다.

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36조(규칙) ----- 필  
요-----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lt;개정 ... 2019. 7. 15.&gt;  <b>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                      (제14조제2항 관련)</p> <p><b>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에 준한다.</li> <li>○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li> <li>○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li> </ul> <p><b>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5">사 용 요 율</th> </tr> <tr> <th rowspan="2">사용구분 (m³/월)</th> <th colspan="4">연도별 m³당 단가 (원)</th> </tr> <tr>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8년 부터</th> <th>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가정용</td> <td>1단계 1~20</td> <td>289</td> <td>370</td> <td>450</td> <td rowspan="9"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사용료의 70%를 감면하고, 30% 적용                         </td> </tr> <tr> <td>2단계 21~30</td> <td>377</td> <td>490</td> <td>600</td> </tr> <tr> <td>3단계 31 이상</td> <td>473</td> <td>610</td> <td>750</td> </tr> <tr> <td rowspan="3">일반용</td> <td>1단계 1~50</td> <td>465</td> <td>600</td> <td>730</td> </tr> <tr> <td>2단계 51~100</td> <td>552</td> <td>710</td> <td>870</td> </tr> <tr> <td>3단계 101 이상</td> <td>719</td> <td>930</td> <td>1,140</td> </tr> <tr> <td rowspan="3">대중탕 용</td> <td>1단계 1~300</td> <td>333</td> <td>430</td> <td>520</td> </tr> <tr> <td>2단계 301~500</td> <td>403</td> <td>520</td> <td>640</td> </tr> <tr> <td>3단계 501 이상</td> <td>517</td> <td>670</td> <td>820</td> </tr> <tr> <td>산 업 용</td> <td>-</td> <td>420</td> <td>540</td> <td>660</td> <td></td> </tr> </tbody> </table> <p>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대상자                      4.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업종별</th> <th>구분 내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가정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li> <li>○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ul> </td> </tr> <tr> <td>일반용</td> <td>○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td> <td></td> </tr> <tr> <td>대중탕용</td> <td>○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td> </tr> <tr> <td>산업용</td> <td>○「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³/월)	연도별 m³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 부터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사용료의 70%를 감면하고, 30% 적용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 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업종별	구분 내용	비 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li> <li>○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ul>	일반용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업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p>■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lt;개정 2021. . .&gt;  <b>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                      (제14조제2항 관련)</p> <p><b>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 구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한다.</li> <li>○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li> <li>○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li> </ul> <p><b>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5">사 용 요 율</th> </tr> <tr> <th rowspan="2">사용구분 (m³/월)</th> <th colspan="4">연도별 m³당 단가 (원)</th> </tr> <tr>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8년부터</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가정용</td> <td>1단계 1~20</td> <td>289</td> <td>370</td> <td>450</td> <td rowspan="9"></td> </tr> <tr> <td>2단계 21~30</td> <td>377</td> <td>490</td> <td>600</td> </tr> <tr> <td>3단계 31 이상</td> <td>473</td> <td>610</td> <td>750</td> </tr> <tr> <td rowspan="3">일반용</td> <td>1단계 1~50</td> <td>465</td> <td>600</td> <td>730</td> </tr> <tr> <td>2단계 51~100</td> <td>552</td> <td>710</td> <td>870</td> </tr> <tr> <td>3단계 101 이상</td> <td>719</td> <td>930</td> <td>1,140</td> </tr> <tr> <td rowspan="3">대중탕 용</td> <td>1단계 1~300</td> <td>333</td> <td>430</td> <td>520</td> </tr> <tr> <td>2단계 301~500</td> <td>403</td> <td>520</td> <td>640</td> </tr> <tr> <td>3단계 501 이상</td> <td>517</td> <td>670</td> <td>820</td> </tr> <tr> <td>산 업 용</td> <td>-</td> <td>420</td> <td>540</td> <td>660</td> <td></td> </tr> </tbody> </table> <p>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업종별</th> <th>구분 내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가정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구점, 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li> <li>○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li>○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함</li> </ul> </td> </tr> <tr> <td>일반용</td> <td>○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td> <td></td> </tr> <tr> <td>대중탕용</td> <td>○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td> </tr> <tr> <td>산업용</td> <td>○「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³/월)	연도별 m³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부터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 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업종별	구분 내용	비 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구점, 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li> <li>○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li>○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함</li> </ul>	일반용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업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³/월)	연도별 m³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 부터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사용료의 70%를 감면하고, 30% 적용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 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업종별	구분 내용	비 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li> <li>○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ul>																																																																																																																																																							
일반용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업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³/월)	연도별 m³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부터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 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업종별	구분 내용	비 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구점, 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계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li> <li>○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호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li>○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함</li> </ul>																																																																																																																																																							
일반용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업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  
(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개정 2021. . .>

수질 하수도 사용료  
(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에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5] <개정 2021. . .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 $\alpha$ )을 고려하여 산정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을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 (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 허용기준 또는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 >

유기물질 농도비율(C)	10 이하	10 < C ≤ 13	13 < C ≤ 17	17 < C ≤ 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 2020. 3. 31.>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빗물이용수	재처리수
가정용	70	70	70
일반용 및 목욕탕	50	50	50
산업용	65	100	100

비고)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측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 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3.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1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해당자 1명당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2명까지만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3호의 해당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으로 한정한다.

4. 감면신청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보조자에 한정한다.

6. 비영리 목적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계산예>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70%인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70% = 70원) = 30원(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7.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개정 2021. . . >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1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해당자 1명당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2명까지만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3호의 해당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으로 한정한다.

3. 감면신청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보조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7.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빗물이용수	재처리수
가정용	70	70	70
일반용 및 대중탕용	50	50	50
산업용	65	100	100

비고)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측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 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3.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8. 제29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단, 산업용은 제외한다)  
 가.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는 사용자

구 분	2021년 7월 ~ 2022년 6월 검침분	2022년 7월 ~ 2023년 6월 검침분	2023년 7월 검침분 이후
감면율	30%	20%	10%

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사용자 (하수관로 사용자)

구 분	2021년 7월 ~ 2022년 6월 검침분	2022년 7월 ~ 2023년 6월 검침분	2023년 7월 검침분 이후
감면율	70%	60%	50%

9. 비영리목적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관리번호	2021A경남창원044		
정책명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하수행정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은주/055-225-6583	
검토의견 요청일자	2021년 4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 시 구체적인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종합 검토 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수도 사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제29조 (감면 등)제1항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u>‘10.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취학 시 24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u>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li> </ul>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필요		
<p>제출일: 2021년 4월 22일</p> <p><b>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b></p> <p>(작성자/연락번호: 이슬기 /055-713-7087)</p>			
하수행정과장 귀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남창원044			
정책명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하수행정과		
	담당자명	이은주	전화번호	055-225-6583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수도 사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제29조(감면 등)제1항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10.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19세미만(취학 시 24세 미만)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p>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p>○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2018년</th> <th style="width: 15%;">2019년</th> <th style="width: 15%;">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평균단가(원/톤)</td> <td>567.10</td> <td>563.63</td> <td>523.45</td> </tr> <tr> <td>생산원가(원/톤)</td> <td>796.57</td> <td>817.86</td> <td>875.91</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d>현실화율(%)</td> <td>71.19</td> <td>68.92</td> <td>59.76</td> </tr> </tbody> </table> <p>○ 다양한 감면제도의 확대 시행 및 시설투자 비용 증가에 대한 재원 등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있음</p> <p>○ 현재 사용료 등에 대한 다양한 감면 혜택 적용으로 추가 감면 시 진행중인 시설투자 사업 축소 및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a href="#">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이 있을 때</a> 검토하여 반영유무를 결정</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단가(원/톤)	567.10	563.63	523.45	생산원가(원/톤)	796.57	817.86	875.91	현실화율(%)	71.19	68.92	59.76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단가(원/톤)	567.10	563.63	523.45																
생산원가(원/톤)	796.57	817.86	875.91																
현실화율(%)	71.19	68.92	59.76																

2021년 5월 4일

**하수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 6.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삭제 <2009. 1. 7.>

⑧ 삭제 <2009. 1. 7.>

##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지방재정법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16. 12. 28., 2019. 7. 15.>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12. 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른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8.>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 7. 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제목변경 2015. 12. 28.]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하수관로의 퇴적·폐색 등으로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9. 7.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9. 7. 15.]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9. 7. 1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으려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5., 2019. 7. 15.>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 : 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월 1회 이상
-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9.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0. 30)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자동이체 납부의 할인)**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상 하수도요금만을 납부하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은 5,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으로 하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5. 5. 8.>
    - 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8.>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에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⑤ 납부대상자는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 등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신고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19. 7. 1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8., 2015. 12. 28., 2019. 7. 15.>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 벽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25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함<개정 2013. 7. 15.>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 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원일정 등의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5.]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영업의 허가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도모,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존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28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에서 우리 시 위생처리장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집·운반비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29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5. 7. 17.><개정 2019. 5. 3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설 2015. 7. 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신설 2015. 7. 17.> <개정 2015. 12. 28.>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6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 3. 31.>

7.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8.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2. 2. 15)

8의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 <신설 2016. 12. 28.>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 제2호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 적용한다.<신설 2015. 7. 17.>

**제3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6. 12. 28.> <단서신설 2016. 12. 2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2. 28.]

**제3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하수 무단방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행정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벌과금 처분금액의 100분의 30

2.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1

건당 30만원

3. 과년도 미수액 징수: 징수금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 경우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80조제5항과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삭제** <2015. 5. 8.>

**제35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그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하수도법」,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및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5. 8.>

**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부칙 생략>

[별표 1] <개정 2013.10.30., 2015. 5. 8., 2015. 7.17., 2016.12.28., 2019. 7. 15.>

##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사용구분 (m <sup>3</sup> /월)	연도별 m <sup>3</sup> 당 단가 (원)			
			2015년	2016년	2018년부 터	
가정용	1단계	1~20	289	370	450	사용료의 70%를 감면하고, 30% 적용
	2단계	21~30	377	490	600	
	3단계	31 이상	473	610	750	
일반용	1단계	1~50	465	600	730	
	2단계	51~100	552	710	870	
	3단계	101 이상	719	930	1,140	
대중탕용	1단계	1~300	333	430	520	
	2단계	301~500	403	520	640	
	3단계	501 이상	517	670	820	
산 업 용		-	420	540	66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대상자

4.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li> <li>◦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li> <li>◦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li> <li>◦기숙사</li> <li>◦오피스텔</li> <li>◦「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만인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li> <li>◦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li> <li>◦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li> </ul>	

[별표 2]

##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2. 2. 15., 2015. 7. 17., 2015. 12. 28., 2017. 4. 20., 2020. 3. 31.>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빗물이용수	재처리수
가정용	70	70	70
일반용 및 목욕탕	50	50	50
산업용	65	100	100

비고) 1.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중수도, 빗물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3.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1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해당자 1명당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2명까지만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3호의 해당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으로 한정한다.

4. 감면신청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보조자에 한정한다.

6. 비영리 목적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계산예>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70%인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70% = 70원) = 30원(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7.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3.“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 6.“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 8.“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 9.“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2장 급수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9. 12. 3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시공업자는 착공 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9. 12. 31.>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과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1.>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5.>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호별로 구분 산정하지 아니하고 구경별로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7. 14.>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9. 2. 15.>

1.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민(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 제3장 급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5.>

-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5. 가구분할 또는 감면사항이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

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기존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12.28.>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2019.8.14.>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6.12.28.>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별표 3의 구

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0.3., 2019.12.3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구경별 요금)** ① 구경별 요금은 별표 3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요금으로 한다.

③ 주 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개정 2019. 12. 31.>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 시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계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공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 2. 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사용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소유권 변동 및 이사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제35조(체납금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2. 15.>

연체금=미납요금 × 3/100 × 12월 × 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기한을 붙인 사용료 체납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소유자(건물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7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려

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측정하여 해당 사용료는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9. 2. 15., 2019. 12. 31., 2020. 3. 31.>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퍼센트, 일반용 및 목욕장용은 시설사용량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12. 31.>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벽체 속 포함)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4. 삭제 <2019. 2. 15.>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 일반용1단계 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6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 2. 15.>

8. 다음 각 목의 대상자 1명당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2명까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9. 2. 15.>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5. 3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9.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 2. 15.>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형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독수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납기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

**제42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을 위하여 시에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수도요금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과장 및 담당주사,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후단신설 2019. 2. 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도요금 과다 부과된 민원에 대하여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사용량의 증가 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요금에 대한 조정심의는 월별, 계절별 사용량과 교체한 계량기의 검침결과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소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관 리

**제43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개정 2019. 2. 15.>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관경 80m/m이하 : 3만원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이상 : 6만원상당의 물품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맡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9. 2. 15.>

**제47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기존 본문에서 이동 2019. 2. 15.] <개정 2019. 2. 15.>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2. 15.>

**제48조 삭제** <2019.8.14.>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0조 삭제** <2019. 12. 31.>

**제51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28., 2019.12.31.>

**제53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부칙 생략>